

제720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

건 명 : 광나루 지하차도 등 5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

심 사 일 : 2013. 7. 29

사업개요

- 용역비 : 75,000천원
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180일
- 시설규모(5) : 2종 1개소, 법정외 시설물 4개소
 - 2종(1) : 광나루 지하차도 연장 367m
 - 법정외(4) : 천호대교 북단 강변북로U턴차로교(44m), 테크노차도육교(38m), 잠실대교북단램프C(40m), 잠실대교북단램프D(70m)
- 발주부서 : 성동도로사업소 (교량보수과)

심사결과 : 적 정 (조건부)

심사항목	심 사 내 용
1. 용역의 필요성 (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) ■ 대 상 □ 미대상	○ 대상 시설물은 시특법상 2종과 법정외 시설물로서 광나루 지하차도외 3개시설물은 전차용역에서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자체점검 (필요시 외부 전문가 활용한 합동점검)을 시행하고, <u>천호대교 북단U턴차로교</u> 는 관리시설물로 추가 편입('03년 준공)된 시설물로서 최초 점검이므로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됨 알림 :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 기술용역발주기관 자체시행기준(부시장방침 10058호, '11.7.8)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○ 용역비 감액조정 : 75,000천원 → 16,720천원 (감 58,280천원 , 대비 77.7%) - 자체시행 : 광나루지하차도 4개시설물 감 58,280천원 · 물가상승률 2.2% 적용 등 ※ 자체시행 시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발주 부서 직접시행
3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○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설물 현황에 적합한 과업내용서 작성 및 용역비 정산철저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지연, 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○ 용역발주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 최소화